

일 자 : 2018 년 12 월 27 일  
 수 신 : 화주 제위  
 참 조 :  
 제 목 : 항만 시설 보안료 징수 안내

1. 귀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.
2.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 제 42 조에 의해 국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 및 화물에 대해 항만 시설 보안료가 아래와 같이 부과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저희 고려훼리는 앞으로도 화주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- 아 래 -

- 적용일자 : 2019 년 1 월 1 일 국내 양.적하분부터

- 적용요율 : 컨테이너 86 원/TEU, LCL 및 BULK 4 원/TON – WFG 에 통합징수

구 분	수 입		수 출	
	기 존	변 경	기 존	변 경
LCL / BULK	₩341	<b>₩345</b>	₩203	<b>₩207</b>
12'	₩2,210	<b>₩2,253</b>	₩2,210	<b>₩2,253</b>
20'	₩4,420	<b>₩4,506</b>	₩4,420	<b>₩4,506</b>
40'	₩8,840	<b>₩9,012</b>	₩8,840	<b>₩9,012</b>